

울산지방법원 2018. 2. 21 선고 2017나2221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18. 2. 21 선고 2017나22216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7. 5. 24 선고 2016가단19205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8. 1. 17

판결선 고 2018. 2. 21

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. 5. 24. 선고 2016가단19205 판결

주문

1.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. 8. 2. 접수 제46067호로 마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48,000,082원 및 그 중 45,620,628원에 대하여 2017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의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(원고는 제1심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'1. 사건의 진행경과'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「13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에서 2017. 11. 28. 최고가 매수인 주식회사 해오름종합건설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, 2017. 12. 11. 최고가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으며, 2017. 12. 11.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[을 제8호증의 1, 2, 3].」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이자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48,000,082원 및 그 중 45,620,628원에 대하여 2017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.

3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확인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

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 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,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 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(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다17585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,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7. 12. 11.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, 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{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가 아닌 제3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, 이 사건 토지의 제3취득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피고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의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보다,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절차(배당이의의 소) 등을 통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더욱 유효·적절한 방법인 점, 설령 이 사건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가 확정되더라도 위 배당이의의 소 등에 이 사건 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인의 이익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} .

4. 결론

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박형준판사 진정화판사 최기원

별지